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⑤대표자성명			⑥전자우편		
⑦소재지					
⑧업태		⑨종목		⑩주업종코드	
⑪사업연도			⑫수시부과기간		
⑬법 인 구 분			⑭조 정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1.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일반		⑯외부감사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1. 여 2. 부	
상호출자제한기업		그외기업		1. 정기신고	
당기순이익과세				2.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3. 기한후 신고	
상장법인		코스타법인		4. 중도폐업신고	
기타법인				5. 경정청구	
비영리법인					
⑰신고구분			⑱결산확정일		
1. 11 71 81 91					
2. 21 72 82 92					
3. 30 73 83 93					
4. 60 74 84 94			50		
⑲법인유형별구분			⑳납부일		
코드			2. 연장기한		
㉑신고일					
㉒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구 분			구 분		
여 부			여 부		
㉓주식변동			㉔장부전산화		
1 2			1 2		
㉕사업연도의제			㉖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1 2			1 2		
㉗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㉘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1 2			1 2		

법인별 세액의 계산

구 분	법 인 지 방 소 득 세			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㉙수입금액	( )			
㉚과세표준				
㉛표준산출세액				
㉜총부담세액				
㉝기납부세액				
㉞차감납부할세액				

안분율의 계산

㉟본점/지점여부		1. 단일사업장 2. 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 지점		㊱특·광역시주사업장여부		1. 여 2. 부	
㊲해당사업장 명칭		소재지		연락처			
㊳안분율의 계산							
구분	종업원 수 (명)	건축물 연면적 (㎡)			안분율 (%) (소수점6자리)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㊴납세지별 산출세액		㊵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	
㊶납세지별 가산세액		㊷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합계	무(과소) 신고	납부지연	기타
		지방세법 제103조의3에 따른 가산세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기타
㊸특별징수납부세액		㊹특별징수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㊺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㊻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㊼환급금 계좌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는 경우)		㊽금주	
㊾금융기관명			
㊿계좌번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03조의24 및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인)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첨부 서류 (본점 신고서)	1.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2.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해당합니다.) 3.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만 해당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① 사업자등록번호 ~ ⑱ 결산확정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⑳ 신고기한 연장승인: 「지방세법」 제103조의51에 따라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3. ㉑ 주식변동 여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여"란에 "○" 표시를 합니다.
4. ㉒ 장부전산화 여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보존하는 경우에 "여"란에 "○" 표시를 합니다.
5. ㉓ 사업연도의제 여부: 해산·합병·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 표시를 합니다.
6. ㉔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3호의9서식 및 별지 제43호의10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여"란에 "○" 표시를 합니다.
7. ㉕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여"란에 "○" 표시를 합니다.
8. ㉖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여"란에 "○" 표시를 합니다.
9. ㉗ 수입금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10. ㉘ 과세표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㉗란, ㉙란, ㉚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㉙ 표준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㉗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㉘란의 금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㉚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2. ㉚ 총부담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㉗란, ㉙란 및 ㉚란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㉘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㉚란을 합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㉛ 기납부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㉗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㉘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㉚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4. ㉜ 차감납부할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㉘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㉙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㉚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5. ㉝ 본점/지점여부는 해당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 '○' 표시를 하며, ㉞ 특·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 표시를 합니다. ㉟ 해당사업장: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16. ㊱ 안분율의 계산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탐단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을 적습니다.
$$\left[ \left( \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 수}} \right) + \left( \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right) \right] \div 2$$
  -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이 안분계산을 하지 않거나 안분율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7. ㊲ 납세지별 산출세액: ㉙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에 ㊱ 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18. ㊳ 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을 적습니다.
19. ㊴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20. ㊵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㉑ 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㉒ 세액란의 합계금액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이차상당액(「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 서식 ㉓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1. ㊶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납세지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 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해당 지점의 납세지별 총부담세액을 적습니다.
      -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법인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중 지점의 기납부세액으로 적은 후의 잔여액을 적습니다.
    -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특별징수세액의 총액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적은 기납부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 수시부과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그 합계를 적습니다.
22. ㊷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65에 따라 재해손실로 차감된 경우의 그 가감액을 적습니다.
23. ㊸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text{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표준세율} \times \text{안분율} \times \left( \frac{\text{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text{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1 \right)$$
24. ㊹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㉙ 납세지별 산출세액 - ㊳ 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 + ㊴ 납세지별 가산세액 + ㊵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 - ㊶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㊷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 ㊸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25.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㊹ 금융기관명 ~ ㊹ 계좌번호란을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6. 「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